

# 1. 도시교통실

1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 의안발의 검토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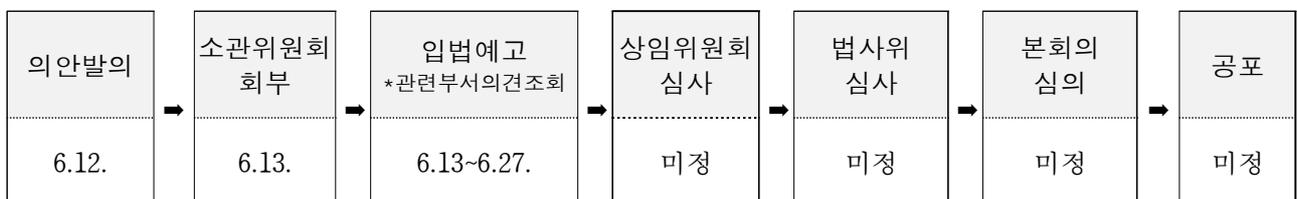
## 도시철도 지하화 특별법 의안발의 검토

### □ 법안 개요

- 의 안 명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일시 : '24.6.12. (발의자 : 고민정 의원(더민, 광진을, 교육위) 등 15명)
  - 발의자 : 고민정, 김영배, 김한규, 김동아, 김준형, 최기상, 채현일, 안규백, 박성준, 정태호, 윤건영, 전현희, 조인철, 이광희, 박홍근 의원
- 제정목적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도시철도 제외에 따른 제도마련
- 시 행 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주요 내용

- (추진대상)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주변지역 개발사업
- (사업체계) 도시철도지하화사업 +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 (추진절차) 종합계획(지자체) → 노선별 기본계획(지자체) → 개발사업 착수
- (재원조달) 지하화비용은 개발사업 수익 활용 원칙, 지자체 보조 가능
- (지원규정) 복합입체적 개발을 위한 건축물 건축,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완화



### □ 검토 의견

-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 현행 철도건설 관련 법령에 따른 도시철도 지하화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곤란
  - ※ 2호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결과(2016) : B/C 0.09, 사업비 3조2천억원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안 중 일부 조문의 수정 필요

## □ 세부 검토내용

### ① **종합계획수립(제4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필요

- (쟁점) 도시철도지하화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하나 해당 내용 미반영
- (검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관련 내용 포함

### ② **기본계획(제8조)** 기본계획 승인 고려사항에 지자체 자원분담비율 제외

- (쟁점)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시 지자체 자원 분담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원칙과 상충
-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분담 비율에 관한 문구 삭제

### ③ **사업시행자(제9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확대 필요

- (쟁점)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공사'로 사업시행자 한정
- (검토) 사업시행자에 '공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포함

### ④ **비용부담(제13조)**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보조 필요

- (쟁점) 도시철도부지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하철사업 비용 보조 주체로 지자체만 명시하는 것은 부당
- (검토) 비용 보조 주체에 지자체 외에 국가도 포함

\* 철도지상부지 면적 : 15만㎡ (시유지67%, 국유지14%, 교통공사16%, 구유지3%) ※교각제외

### ⑤ **출자관련(제14조)** 국·공유지의 출자대상에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 (쟁점) 도시철도부지는 국·시·구유지, 교통공사 소유지 등 혼재되어 있으나 출자대상을 국유지로 한정해 정부출자기업체만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
- (검토) 국유재산 외에 공유재산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및 출자대상 기관에 지방공기업 등 추가

## □ 향후계획

- 법률안 市 검토의견 정부부처 제출('24.6.) 및 진행경과 지속 모니터링

참고 1	조문별 비교표	
특별법안	검 토 안	
<p>제4조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li> <li>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li> <li>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li> <li>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li> <li>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li> <li>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li> <li>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li> </ol>	<p>제4조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p> <p>1.~7.(원안과 같음)</p> <p>8. <u>「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u></p> <p>9.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u></p>	
<p>제8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u>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비율을 포함한</u>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u>자</u>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제9조(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u>국유재산</u>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도시철도 지</p>	<p>제9조(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u>국·공유재산</u>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철도 지</p>	

특별법안	검 토 안
<p>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p>	<p>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p>
<p><b>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b> ①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자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b>지방자치단체</b>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b>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b> ①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자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b>국가, 지방자치단체</b>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b>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b> ① <b>국토교통부장관</b>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지를 「<b>국유재산법</b>」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p> <p>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p> <p>2.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b>정부출자기업체</b></p> <p>② ~ ④ 생략</p> <p>⑤ <b>국유재산</b>의 처분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국·공유재산의 출자 등)</b> ①<b>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b>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지를 「<b>국유재산법</b>」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p> <p>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p> <p>2. 「<b>지방공기업법</b>」에 따른 <b>지방공기업</b></p> <p>3.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설립하는 <b>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b></p> <p>② ~ ④ 원안과 같음</p> <p>⑤ <b>국·공유재산</b>의 처분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특별법안	검 토 안
------	-------

참고 2	<b>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b>
------	---------------------------------------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
------------	-----

발의연월일 : 2024. 6. 12.

발 의 자 : 고민정 · 김영배 · 김한규  
김동아 · 김준형 · 최기상  
채현일 · 안규백 · 박성준  
정태호 · 윤건영 · 전현희  
조인철 · 이광희 · 박홍근  
의원(15인)

###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및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됨. 이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3. “도시철도부지”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4.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과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 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도시철도부지 및 도시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한다.
- 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 3.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 5. 그 밖에 효과적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 2. 도시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 3.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 4.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 5.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 7. 자원 조달 계획
-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공사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6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자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철도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 ④ 도시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 도시철도 지상구간 현황

○ 노 선 수 : 4개 노선(2·3·4·7호선)

○ 총 연 장 : 29.6km

※ 한강 및 지천, 대부분 도로 상부를 고가형태로 통과

연번	노선명	지상 구간	지상 연장	정거장수
1	2호선	한양대역 ~ 잠실역(잠실철교)	8.02km	7
		영등포구청역~합정역(당산철교)	2.5km	1
		신림역 ~ 신도림역	4.82km	3
		신답역 ~ 성수역(성수지선)	3.57km	2
2	3호선	옥수역 ~ 압구정역(동호대교)	2.0km	1
3	4호선	동작역 ~ 이촌역(동작대교)	2.2km	1
		쌍문역 ~ 당고개역	4.5km	4
4	7호선	청담역~건대입구역(청담대교 하부)	2.0km	1



< 도시철도 지상구간 현황 >